##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공고

2019. 9. 16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 27조 1항 및 당사 정관 제8조의3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\_ 아 래 \_

- **1.**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,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(2021. 6. 15.) 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(2021. 6. 10.) 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 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 ※ 주주 조치 사항

-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(2021. 6. 10.) 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(2021. 6. 10.) 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3. 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 시행일(2021년 6월 15일)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2021년 5월 13일

주식회사 크래프톤

**대표이사 김 창 한** (직인생략)